

이제 이렇게 행동합시다!

▶ 사소한 문제로 돌리지 맙시다.

성희롱은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과 전통적인 성역할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로서 결코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 직장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문제를 자기 마음 속에 묻어두지 말고 직장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그 문제를 토론하고 공동으로 대처합시다.

▶ 상대방에게 중단하라고 경고합시다.

침묵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할수록 가해자는 더욱더 치근덕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하게 나울지도 모릅니다.

▶ 법적 소송을 제기합시다.

성희롱을 항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 승진, 전직, 해임등의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 알립니다 ◆

*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불이익을 경험하신 분은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02-529-4271	한국여성의전화	02-269-2965
한국여성민우회	02-269-576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7348
서울YMCA청소년상담실	02-725-6309	전북여성의전화	0652-87-7324
광주여성의전화	062-225-0485	부산성폭력상담소	051-642-7080
대구여성회	053-421-6758	기독교평화여성회	0652-87-3833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됩니다

12월 7일(화) 오후 3시,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성희롱죄’ 법률소송 제 1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죄로 법정에 서다!



“뭐 그런 일로 호들갑이냐구요?”

성희롱은 여성의 인권과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거창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교평화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대학원자치회협의회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중의 한사람인 우조교(25세)의 경우, 우조교가 발령을 받기 2-3개월 전부터 출근할 것을 요구하며 기기연수등을 명분으로 원치않는 신체접촉(뒤에서 껴안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과 집요한 데이트(등산과 여행을 함께 가자)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조교가 신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 우조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업무량을 업무수행능력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업무소홀이라는 평가를 받게하였고, 우조교가 이에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자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해왔으며, 이로써 우조교는 임기만료일(93년 8월 31일)이 되기도 전에 부당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조교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등에 신교수의 성희롱 사실과 부당해임에 대하여 탄원과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으나, 어떤 해답도 듣지 못했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교내에 학교교육의 실추된 도덕성과 수차례에 걸친 신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대자보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회협의회등으로 이루어진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우조교의 대자보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나, 오히려 신교수는 우조교를 명예훼손과 협박의 혐의로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조교는 신교수와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첫 재판이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10월 19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교육부 등에 진정서 보내기, 성희롱 피해 상담 창구 개설, 공개토론회, 홍보활동 등 각종 연대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우조교의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본 사건의 올바른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

1. 신교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학교당국은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후 가해자를 처벌(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재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서울대학교 김종운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갈음하는 감독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김종운 총장은 상사 또는 동료직원에 의한 성희롱행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직장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1. 재판부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폭력 대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더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하는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언어, 몸짓, 표정, 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서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것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품평을 하는 것(잘빠졌다, 섹시하다 등) ▶음란한(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음란하거나 징그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의도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원하지 않는데도 키스하거나 껴안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것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 ▶직접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는 것 ▶직장에 누드나 포르노사진, 포스터, 그림, 도색잡지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집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데이트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쟁되고 있는 외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의 대상은 아직도 여성이 대부분이며, 반복적인 성희롱을 입은 여성은 심신불안증, 긴장감, 우울증, 불면, 분노, 두통, 소화불량등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시달리고, 심할 때는 직장을 결근, 이직하거나 또는 승진이나 해고등의 직간접적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희롱은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중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여성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고용상의 성차별' 행위로서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묵인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성희롱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이다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모욕감이나 수치심,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일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는 더이상 한 여성이 개인적으로 인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성적 농담은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불쾌한 성적 희롱을 경험하고도 모르는척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성희롱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